



교육부

수신 수신처 참조

(경유)

제목 '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' 홍보 협조 요청

1. 관련: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-1481(2018.5.29.)
2. '18.5.20.부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'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'을 실시하여야 하고,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, 고용노동부로부터 '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' 의무화 제도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통해 원활히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<붙임>자료를 활용하여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홍보내용: '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' 의무실시 안내

나. 홍보방법

- 1) 유?초?중?고?특수학교: 가정통신문, e알리미 등을 통해 학부모 안내,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
- 2)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: 직원 및 산학협력단 등에 안내

다. 문의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-1519

붙임 1.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문 1부

2. 인식개선 배너 1부

3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카드뉴스 4P 1부. 끝.

전 결	장		경		조경 인
2018. 6. 4	9 시 50 분	1348			
학생복지처					

교육부장관



수신자 시도교육청 외 1

교육연구사	기안06/01 김갈태	지방교육행정 사무관	검토06/01 김창수	장애학생진로 교육팀장	전결06/01 이홍열
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특수교육정책과-2663 (2018-06-01) 접수 2018-1348 (2018-06-04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-2동 교육부 (어 / www.moe.go.kr
진동)

전화번호 044-203-6564 팩스번호 044-203-6687 / gtkim007@korea.kr / 공개